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| no. 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사항 | 결산 | 변동성 | 법 개정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|
| 1   |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          | 1)    | -  | -   | 주 1) |
| 2   |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   | 2)    | ○  | ○   | 주 2) |
| 3   |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     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3) |
| 4   |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    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4) |
| 5   |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5) |
| 6   |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호투자회사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3) |
| 7   |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7) |
| 8   |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    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3) |
| 9   |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  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6) |
| 10  |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     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5) |
| 11  |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         | 3)    | -  | -   | 주 5) |
| 12  |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 | -     | ○  | -   | -    |
| 13  |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        | -     | ○  | -   | -    |
| 14  |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           | -     | ○  | ○   | -    |
| 15  |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(주식)          | -     | ○  | -   | -    |
| 16  |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          | -     | ○  | ○   | -    |
| 17  |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      | -     | ○  | ○   | -    |
| 18  |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      | -     | -  | ○   | -    |
| 19  |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      | -     | ○  | -   | -    |
| 20  |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      | -     | ○  | -   | -    |
| 21  |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H)(주식)       | -     | ○  | ○   | -    |
| 22  |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      | -     | ○  | ○   | -    |
| 23  |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  | -     | -  | ○   | -    |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- 2) 클래스 명칭 변경
- 3) 대표이사 변경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12월 07일 (화)

4. 변경 내용:

1) 환매수수료 삭제

| 항목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   |
|---------|---|----------|
| <환매수수료> |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,<br>30 일 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 | 환매수수료 없음 |

2) 클래스 명칭 변경

| 항목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|
| <클래스 명칭> | 종류 A [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]<br>종류 A-e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 | 종류 C [수수료미징구 -오프라인]<br>종류 C-e 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 |

3) 대표이사 변경

| 항목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74조(발기인의 성명, 주소) |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.<br>미래에셋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<u>김 미 섭</u> (인)<br>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Tower 1 13 층<br>(청진동, 그랑서울) |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.<br>미래에셋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<u>이 병 성</u> (인)<br>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Tower 1 13 층<br>(청진동, 그랑서울) |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<br>등급 | 변경 후<br>등급 | 변경<br>전(%) | 변경<br>후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         | 4          | 5          | -          | 1.14       |
|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 | 3          | 3          | 11.51      | 14.1       |
|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        | 2          | 2          | 22.65      | 23.5       |
|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    | 1          | 1          | 26.99      | 26.2       |
| 미래에셋슬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     | 5          | 5          | 3.02       | 3.3        |
|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H)(주식)     | 1          | 2          | 26.52      | 21.89      |
|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    | 1          | 2          | 25.03      | 20.27      |
|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| 2          | 2          | 18.4       | 18.51      |

5)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

주1)

| 항목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다.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지 아니하다.  |
| 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<p>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&lt;신설&gt;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|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2)

| 항목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
주3)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<신설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<u>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</li> </ol> |

|  |  |   |
|--|--|---|
|  |  | <p><u>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③<u>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5. <u>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④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|
|--|--|---|

주4)

| 항목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 |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</u> |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</u> |

|   |   |   |
|---|---|---|
|   | <p>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<br/>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| <p>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<br/>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<br/>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<br/>본다.</p>   |
| <p>제67조의 2(집합투<br/>자업자 및 신탁업자<br/>의 변경)</p> | <p>&lt;신설&gt;</p>   | 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<br/>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<br/>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<br/>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<br/>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<br/>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br/>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<br/>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<br/>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<br/>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<br/>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<br/>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<br/>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<br/>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br/>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<br/>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<br/>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<br/>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<br/>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<br/>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<br/>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5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<br/>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<br/>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<br/>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li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<br/>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<br/>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<br/>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<br/>우</u></li> </ol> |

|  |  |   |
|--|--|---|
|  |  | 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<br>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<br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br>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<br>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<br>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<br>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<br>수 있다. |
|--|--|---|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5)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65조(해산)                   |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br>1. ~6. <생략><br>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br>1. ~6. <생략><br>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 |
| 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<신설>   | 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br>② <u>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u><br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br>2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br>3. 「 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br>③ <u>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u><br>1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 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<p>2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p> <p>3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5. <u>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6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 <p>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|
|--|--|--|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6)

| 항목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 | <p>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| <p>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|
| 제66조(해산)       | <p>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/p> <p>1. ~6. &lt;생략&gt;</p>   | <p>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</p> <p>1. ~6. &lt;생략&gt;</p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7. 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|
| 제67조의 2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<신설>  | 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5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6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 <u>합병·분할·분할합병</u></li> <li>8. <u>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9. <u>법 제184조제4항,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</u></li> <li>10. <u>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li>11. 「<u>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li> <li>12. <u>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 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li> </ol> |



|  |  |   |
|--|--|---|
|  |  | ④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<br>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<br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br>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<br>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<br>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<br>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<br>수 있다. |
|--|--|---|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주7)

| 항목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54조(자산운용의 제한) |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|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 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|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